

수원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가단5391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피고B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2023. 4. 6.

판결 선고2023. 6. 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1. 5.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1. 6. 11. 접수 제730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020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7. 'C은 원고에게 6,830,450원 및 위 금원 중 1,733,802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나. C의 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20. 12. 1.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E, 자녀들인 C, F, 피고가 있었다. 그런데 E가 2021. 3. 28. 사망함에 따라 그녀의 재산을 자녀들인 C, F, 피고가 각 균등하게 상속받았다. 위와 같은 순차 상속의 결과 C, F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지분은 각 1/3이 되었다.

다. 피고는 2021. 5. 4. C 및 F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2021. 6.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성립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법정상속분인 1/3 지분은 C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인데, C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를 포기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망 모 E에 대한 병원비 40,267,730원을 전액 부담하였고, 이에 망인은 생전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형식상 이전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이나 사실상 망인의 생전에 피고가 매입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사실상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을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1/3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진만

별지